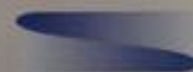




-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학생생활연구소 구내 2303) E-mail: counsel@uoscc.uos.ac.kr
- 인문학관 1층 5102호 여학생 상담실(구내 2291)로 사건 접수
- 총여학생회
• 구내 2367
• 홈페이지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서 시대인마당 선택 후 접속)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전화: 2210-2114 직통: 2210-2303
학생생활연구소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학생생활연구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I. 성의분 · 성의분

1. 성의분 · 성의분

2. 성의분 · 성의분

II. 성의분 · 성의분

1. 성의분 · 성의분

2. 성의분 · 성의분

3. 성의분 · 성의분

성(性) ? ? ? ? ?

III. 성의분 · 성의분

IV. 성의분 · 성의분

1. 성의분 · 성의분

2. 성의분 · 성의분

3. 성의분 · 성의분

V. 성의분 · 성의분

1. 성의분 · 성의분

2. 성의분 · 성의분

3. 성의분 · 성의분

4. 성의분 · 성의분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학생생활연구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차례

I. 성희롱·성폭력이란?/ 3

1.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3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II. 성희롱의 예/ 6

1. 혹시 이런 일들을 겪었나요?/ 6
2. 이런 말들을 들어 보았나요?/ 7
3. 혹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나요?/ 7

III. 대학내 성폭력 유형/ 9

1. 학내 성폭력/ 9
2. 교수-학생간 성폭력/ 10
3. 선배-후배 혹은 동기간 성폭력/ 13

IV.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영향/ 15

1. 심리적 영향/ 15
2. 신체적 영향/ 15
3. 사회적 영향/ 16

V.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17

1. 강간 성폭력 피해 직후의 대처 방법/ 17
2.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 대처 방법/ 18
3. 비공식적 대처 방법/ 19
4. 공식적 대처 방법/ 19



VI. 성폭력 예방/ 21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21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22
3. 데이트시 주의점/ 22

성폭력! 이렇게 예방합시다/ 24

VII.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25

1. 학내/ 25
2. 외부/ 25

부록/ 26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 26

I. 성희롱·성폭력이란?

1.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 및 남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폭력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이 컸을 때에만 해당된다.

※ 신체적 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 피해자는 오직 여성 뿐이다.(특히 매력적인 젊은 여성)

※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피해자로 보고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II. 성희롱의 예

1. 혹시 이런 일들을 겪었나요?

- 신체의 특정부분 사이즈를 묻는 등 개인의 신체특성을 화제화
- 음담패설 등 듣기 거북한 비속한 농담
- 성적인 경험이나 성생활에 관한 질문
-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 누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직장에 붙이는 것
- 비속한 사진, 기사 등을 고의로 보이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 직장의 컴퓨터 화면에 음란 화상을 표시하는 것
- 식사나 데이트의 끈질긴 요구
- 성적인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성적인 내용의 편지, E-메일을 계속 보내는 것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
- 욕실, 화장실 등을 몰래 보는 것

성희롱의 예

2. 이런 말들을 들어 보았나요?

-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여성에게 '오늘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기인가?' 등으로 말하는 것
- '남자인 주제에 끈기가 없다'
- '여자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
- 여성은 직장의 꽃 역할만으로 좋다
- 여자는 학문같은 것은 안해도 좋다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속어(예:영계)의 남발
- 남성에게 "코가 크면 정력이 세다" 하는 식의 발언

3. 혹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나요?

-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파르기, 사적인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것
- 성적인 관계 강요
-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부르기를 강요하는 것

성희롱의 예

- 술자리에서 상급자 등의 곁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따르기, 춤추기 등을 강요하는 것

성희롱을 한 사람이 상급자인 경우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동의 또는 합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III. 대학내 성폭력 유형

1. 학내 성폭력

- ◆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접촉(언어적, 육체적)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 성적인 접근과 접촉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학업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2. 교수 - 학생간 성폭력

-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언동을 통해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 00대학 여성조교 성희롱 사건

상황 : 00대학 실험실 여성 조교가 담당 남성 교수로부터 기기 교육시 의도적인 신체 접촉 및 성과 관련된 언동 등 성희롱을 받았으며, 이에 불응하자 책임용되지 못하였다.

판결과정 1.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 교수의 행위는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달리하고 성차별을 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3천만원 배상)

판결과정 2. 1995년 7월25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교수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전라 신체적 접촉등에 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과정 3.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은 피고의 언동은 분명히 성적인 동기나 의도를 가진 것이며,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인격적 침해로 위법행위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 과 :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친밀한 성적관계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선배 - 후배 혹은 동기간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희롱이나 가벼운 성추행에서부터 강간 등을 포함한 성폭력

▶ 선배-후배 동기간 성폭력의 예

밤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신후 러음하여 몸을 잘 못가누는 여학우를 자취방에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간 후에 여학생의 자취방에서 강간. 그 후 이를 빙미호 "계속 만나주지않으면 집이나 주위에 알려겠다."라고 협박하여 데이트강간 후, 임신하자 "난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끊음

직접적인 강간 뿐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훑쳐보기,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MT에서의 성희롱 등
피해 학생의 신고가 있으면,
실명(비실명)공개 사과문과 일정한 기간의
성교육을 받게 되며,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영향

1. 심리적 영향

- ◆ 정서적 불쾌감과 충격을 경험하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낀다.
- ◆ 자기비하와 열등감, 심한 우울감 및 자책감, 자살 시도.
- ◆ 피해자의 성적 정체감 왜곡, 이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 형성
- ◆ 막연한 불안감, 주의집중곤란, 의욕저하, 대인관계 기피, 자포자기적 행동

2. 신체적 영향

- ◆ 두통, 식욕상실, 소화불량, 불면증, 수면장애, 월경불순 등 초래
- ◆ 여성의 질이 파열될 수 있다.
- ◆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인한 고통, 불임 초래 가능
- ◆ 에이즈 성병 감염 등

3. 사회적 영향

- ◆ 피해자의 업무 능력, 혹은 학습 능력 및 의욕 저하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사회·국가적 손실 초래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히며
커다란 억압으로 존재합니다.



V.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1. 강간 성폭력 피해 직후의 대처 방법

- ▶ 수치심이 아닌 분노로 대응한다.
- ◆ 안전한 곳으로 이동
-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에 보관 (증거자료)
- ◆ 강간 피해의 경우, 목욕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
(증거 채취와 외상 치료, 성병 감염 여부, 임신 가능성 여부 확인 필요)
-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 받기
- ◆ 고소는 가능한 빨리 결정(고소기간 1년이내)하며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고소장 작성, 변호사상담과 법률적 조언, 경찰 및 병원 연계 등)

2.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 대처 방법

① 가해자 직접 만나기

- ◆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 상담원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서적 지지 혹은 필요한 정보 제공 받는다.
- ◆ 가해자를 만난 사실과 결과에 대해 기록 남겨두기 (녹음)

② 가해자에게 편지 쓰기

- ◆ 가해자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 ◆ 감정적 논쟁을 피하고 싶을 때
- ◆ 편지에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생각 및 느낌을 정리
- ◆ 편지 복사 및 편지 발송 사실을 주변에 알림

3. 비공식적 대처 방법

- ◆ 기존 생활에 되도록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할 때
- ◆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 노출을 꺼릴 때
- ◆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할 때
- ◆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 ◆ 피해자가 대학 내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담당자가 개입
 - ◆ 담당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만 담당.
 - ◆ 공식적 기록 無
 - ◆ 가해자에게 공식적 처벌이나 경고 내려지지 않음

4. 공식적 대처 방법

-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폭력의 강도가 심하다고 생각될 때
- ◆ 담당자 중재 이후에도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여전할 때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 ◆ 가해자의 맞대응적 요소가 오히려 증대될 때
 - ◆ 피해자는 학내 처리 절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원에 제소 가능(증거를 잘 갖추어야 한다.)
 - ◆ 교내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에 신고(공식 기록 有)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 · 지속적으로 성희롱 · 성폭력이
행해 질 경우, 피해학생이 학내 공식기구인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 공식적인 기록要!)

VI. 성폭력 예방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 이성을 자기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
가짐 갖기
- ◆ 이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성들이 남녀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 ◆ 성차별적 농담이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 ◆ 상대방 이성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
존중해주기
- ◆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고 동의로 간주하지 말고 분명히 물
어보고 대답 듣기

분명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지침 정하기
-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이나 요구가 있으면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

3. 데이트시 주의점.....

- ◆ 데이트 비용은 반반 부담
- ◆ 예 / 아니오 의사 표시 분명히 하기(침묵을 동의로 오해할 수 있다)
- ◆ 여성의 경우 데이트 상대로 피해야 할 남성 특성
 - ◆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격
 - ◆ 여성 일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성격
 - ◆ 당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는 성격
 - ◆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셨을 때 행동 통제가 안되는 남성

성희롱 ·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성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 성폭력! 이렇게 예방합니다 ■

-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 ▶ 성에 대한 가치, 행동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가집니다.
- ▶ 불편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를 표시합니다.
-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 ▶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술을 마십니다.
- ▶ 비상금을 항상 소지하여 어디서든 택시를 탈 수 있게 하며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둡니다.

VII.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학내

- ◆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학생생활연구소 구내 2303)
E-mail : counsel@uoscc.uos.ac.kr
- ◆ 인문학관 1층 5102호 여학생 상담실 (구내 2291)로 사건 접수.
- ◆ 총여학생회
· 구내 2367
· 학교 홈페이지 → 학생자치기구 → 총여학생회
(<http://www.uos.ac.kr/~womensa/>)

2. 외부

- ◆ 한국 성폭력 상담소 529-4271,2
- ◆ 한국 여성 민우회 739-8858
- ◆ 위 기 전 화 1366
- ◆ 여성특별위원회 차별 신고 센터: 02-3477-4076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성폭력의 의미)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범죄행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교수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

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상근조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 위원으로 대체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성폭력과 관련된 제반 대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 정립
3.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안 연구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상담소에서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

가 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성폭력 사건의 처리) ①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여학생상담실의 상근조교는 신고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방법·과정·처리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따로 둔다.

④ 위원회는 보고된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 방

법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9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